

#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영옥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33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6일  
발 의 자: 김영옥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강석주, 김길영, 김원중,  
김종길, 김지향, 김춘곤,  
김혜영, 남궁역, 박 석,  
박성연, 박영한, 박춘선,  
서상열, 서호연, 신동원,  
유만희, 이병윤, 이봉준,  
이상욱, 이종태, 최윤희  
의원(21명)

## 1. 제안이유

-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, 전통문화유산인 효 문화 장려를 위해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할 필요가 있음.
- 이에 90세 이상 어르신 등 나이 드신 부모를 봉양하는 가족 등을 표창하여 부양가족을 격려하고, 장수노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효행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효행에 대한 표창 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하고, 매년 표창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5조).
- 나. 100세 장수노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(안 제6조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제목을 “포상”에서 “표창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창할 수 있다.

1. 효행우수자 등
2. 9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
3. 효행 문화의 확산·노인복지 증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기관·단체 등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창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한다.

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장수노인 지원) ① 시장은 매년 10월 경로의 달에 경로효친사상 확대를 위해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수 시민패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지원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100세인 장수노인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포상) 시장은 효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<u>효행문화의 확산에 뛰어난 이바지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.</u>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5조(표창) ①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<u>표창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효행우수자 등</u></li> <li>2. <u>9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</u></li> <li>3. <u>효행 문화의 확산·노인복지 증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기관·단체 등</u></li> </ol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창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한다.</p> <p>제6조(장수노인 지원) ① 시장은 매년 10월 경로의 달에 <u>경로효친사상 확대를 위해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수 시민패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지원일 현재 <u>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100세인 장수노인으로 한다.</u></p>
<p><u>제6조·제7조 (생략)</u></p>	<p><u>제7조·제8조 (현행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)</u></p>

문서번호

2023101300000036

## 비대상사유서

요청인 : 김영옥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  
이정수 팀장  
손제승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13.

회신일 : 2023.10.18.

내용문의 : 02-2180-7954

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

### 목 차

1. 판단 근거
2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 
재정분석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(표창), 제6조(장수노인 지원)을 변경·신설한 개정안으로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추진 사업(붙임 참조)이므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     이정수

주    무    관      손제승

☎ 02-2180-7954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**

[붙임1]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

□ 사업목적

- 어르신들이 봉사 활동을 통하여 사회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 제공
- 어르신들에게 체육·여가활동, 견학, 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 지원

□ 산출근거

(단위: 천원)

과목구분	2023년 예산내역	
사무관리비	○ 노인의날 기념행사 등 5,000,000원	= 5,000
시책추진업무추진비	○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업무추진 1,800,000원	= 1,800
민간경상사업보조	○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대 활동지원 1,386,000,000원	= 1,386,000
	○ 어르신생애체험센터 운영 32,401,000원	= 32,401
	○ 어르신 생활정보 매체 제공 200,000,000원	= 200,000
	○ 어르신지도자 육성 지원 110,500,000원	= 110,500
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	○ 서울시연합회 인건비 429,432,000원	= 429,432
	○ 서울시연합회 운영비 97,920,000원	= 97,920
민간행사사업보조	○ 어르신 건강대축제 지원 315,000,000원	= 315,000
	○ 어버이날, 노인의날 기념행사 등 100,000,000원	= 100,000
	○ 10월 경로효친 행사지원 27,000,000원	= 27,000
	○ 어르신 지도자 선진지 견학 200,000,000원	= 200,000

자료 : 2023년 서울시 복지정책실 사업설명서

## II 표창계획

- 표 창 일 : 2023. 5. 2.(화) 예정
- 수여방법 : 제51회 어버이날 기념식 행사에서 시장 수여

### ❖ 제51회 어버이날 행사 개요(안)

- 일 시 : 2023.5.2.(화), 10:00 ~ 12:00
- 장 소 : 장충체육관
- 주최 / 주관 : (사)대한노인회서울특별시연합회
- 참석대상 : 시장, 시의회 의장, 서울시 교육감,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등 300명
- 주요내용
  - ▶ 제51회 어버이날 기념식(식전 공연, 감사영상 및 아버지 은혜 제창)
  - ▶ 효행 유공자 및 단체 표창(시장, 시의회의장, 연합회장상)

※ 100세 이상의 어르신을 부양하고 있는 (손)자녀 효행 장려 표창 시상은 5월 중 별도 행사로 수여 예정

### 소요 예산

- 표창장 제작비용 : 704천원
  - 표창장 세트(표창장, 커버) : 704천원(8천원 × 88개)
- 예산과목
  - 어르신복지과,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 및 어르신단체 육성 등,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 지원, 사무관리비(201-01)